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가단2374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양선화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기현

변론 종결2020. 12. 8.

판결 선고2021. 2. 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19. 12.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2. 9. 접수 제232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8.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49373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9. 2.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6,557,320원 및 그 중 10,759,356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대하여 C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0. 9.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은 2014. 5. 6. 사망하였는데,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자녀인 C, E가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와 C, E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이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인 2/7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F장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14. 5. 6.에 이루어졌거나 늦어도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한 2014. 11. 27.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만일 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만료되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게 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는 망인의 사망일인 2014. 5. 6.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강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대로 취득 신고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반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 신고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와 C, E는 2014. 11. 7. 과세관청에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대로 취득 신고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2019.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2019. 12. 3.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대법원 등기예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2019. 12. 3. 또는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9. 12. 9.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는 때로부터 5년 이내인 2020. 5. 18.에 제기되어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대법원 등기예규 제438호<상속 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제정 1982. 4. 13.)>는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되므로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들 사이에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진 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라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등기원인일로 기재되므로,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일과 등기원인일자는 다를 수 있다.

②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와 C, E가 2019. 12. 3.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작성하거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전까지 피고와 C, E 사이에 실제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하여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 우유 배달, 슈퍼마켓 운영 및 건물 청소일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유지에 재정적으로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또한 아들인 C가 성년이 된 후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C의 채무 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이다.

나) 판단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로 피고의 기여분을 산정하여 인정받았다거나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피고의 소득활동이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유지에 기여한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③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E의 진술서)은 그 작성자와 피고 사이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대원

별지